

2021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근거법규 :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 공모기간 : '21. 6. 17.(목) ~ 6. 30.(수)
- 신청분야
 - ┌ 공유단체·기업 지정 : 3년간,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동홍보 추진
 - └ 활성화 지원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중 본 공모에서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기업)
- 신청방법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kyj4969@ccei.kr) 제출
 - 홈페이지 :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 접수처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 055-291-9386
- 주최/주관 :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① 공유단체 · 기업 지정

가. 지정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 보유할 것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공유경제」란?(조례 제2조 제1호)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
- 「공유단체」란?(조례 제2조 제2호)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조례 제2조 제3호)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 사회문제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
 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 접수 마감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 경상남도 내에 지사 및 지점을 보유하고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나. 지원내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 지원사항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공유경제사업 홍보(언론, 홈페이지 등) 등 행정적 지원

2]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심사 미충족 시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에서 제외
 - 공유단체·기업 신청 없이 활성화 지원사업만 신청 불가(단, 기 지정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은 활성화 지원사업만 신청 가능)
-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경상남도, 타 지자체로부터 공유경제 관련 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신청불가(단, 지원항목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

나. 지원대상 : 5개 단체(기업) 내외

다. 지원내용

- 사업비 : 1개 단체(기업) 당 최대 11백만원 이내(부가세 10% 별도 자부담)
 -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항목

항 목	내 용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단체(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HP, 시제품 제작, 앱개발 등)
각종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기자재 임차비)
홍보비	단체(기업) 제품과 단체(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단, 구체적 내용 검토 후 사업비 지원불가항목 판단 시 지원불가

3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기준

① 공유경제 단체·기업 지정 : 모든 항목 평가에서 적격인 경우

항 목	평가 지표	비고
4개		적격여부
공유경제 관련성	• 공유경제 활동실적(최근 6개월이상), 계획의 타당성	여/부
지속가능성	• 재무상태, 수익성, 법·제도 저촉여부 등	여/부
사회 관련도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	여/부
참여도	•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도, 확산성(플랫폼 운영) 등	여/부

②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항 목	평가 지표	배 점
합 계		100
공유경제 촉진 효과	•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30
사업계획 타당성	•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사업비 적정성	30
사업수행 능력	• 인력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	20
사회 관련도	•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0

나.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담당부서 사전 심사(공모 요건 부합 여부 확인)
- 본심사(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심의·의결
 - 5분 이내 발표(단체·기업), 5분 질의응답

다. 심사일정

- 본 심 사 : '21년 7월 중
- 결과발표 : '21년 7월 중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게시(지정 결과) 및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류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가.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

-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신청 단체(기업) 소개서 1부 【서식1-1】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중소기업 (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 경상남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공유경제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단체(기업)의 회칙,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 항목,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단체만 해당)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나.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2】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부 【서식2-1】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서식2-2】
- 사업수행 협약서 1부 【서식2-3】
- 심사발표 사업계획서(PPT 파일)

5 기타사항

가. 공통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 지정 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요건

1.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도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5.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6.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경제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7. 그 밖에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경상남도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후 지정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지정된 단체(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단체(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환수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유단체(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66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 055-291-9386, 9377